

언론 사람

인터뷰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미디어트렌드

성큼 다가온
오디오 퍼스트 시대

옛 그림과 차 한잔

그림 속에 살아 숨 쉬는
조선의 여인들

언론과 사람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세상



날시 : 2017년 8월



제15대 언론중재위원장

양인석

약력

- 제21회 사법시험 합격
- 제11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고법 부장판사
- 감사원 감사위원
- (현) 법무법인 서정 구성원 변호사
-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2015.8~현재)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을 맡게 된 양인석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로 인한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언론의 역기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그 존재가치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언론분쟁을 조정하고 인격권 등 법익 침해사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는 두 가지 법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조정과 권고가 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라는 두 가지 헌법적 가치의 조화를 항상 염두에 두고 위원회의 사회적 책무에 임하였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자세를 계속 견지하여 위원회의 존립 목적에 부합하는 시대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인격권 보호와 건전한 언론문화 조성, 제도 개선 및 위원회 발전이라는 막중한 책임이 저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혼자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이지만, 중재위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신다면 우리 위원회가 언론과 국민을 이어주는 든든한 가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8. 28.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likely belonging to Yang In-seok, the Chairman of the Korea Press Freedom Commission.

CONTENTS

2017 September Vol.207

홈페이지 www.pac.or.kr

언론중재 Eye-Net people.pac.or.kr

 pacblog.kr

 facebook.com/pacnews

 goo.gl/t9Kjeu

발행인 양인석

편집인 조남태

발행일 2017년 9월 1일

등록 2016년 9월 23일 서울중, 라00646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빌딩 15층

T 02-397-3114 F 02-397-3069

구독신청 홍보팀 T 02-397-3082~4

편집·디자인 (주)계문사 T 02-725-5216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02 취임사

04 인터뷰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06 미디어트렌드

성큼 다가온 오디오 퍼스트 시대

07 심리학브런치

어떻게 먹어야 마음 건강에 좋을까

08 언론법 이모저모

악인이 진실해지는 시간

09 세상읽기

법과 밥

10 연중노트

Don't look back in anger

11 영화 속 설득이야기

입은 하나고 귀는 둘인 이유

12 옛 그림과 차 한잔

그림 속에 살아 숨 쉬는 조선의 여인들

14 위원동정 / 위원회 뉴스

15 클로즈업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조정·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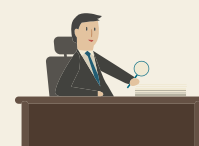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교육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치에 대한 신념, 아흔 여덟 개 버킷리스트에 담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2017~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1992~ 법무법인 세창 대표

1991~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1983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66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이 커져가는 요즘, 법조삼륜의 한 축을 이루는 대한변협이 그리는 법조계는 어떤 모습일까? 집무실에 걸려있는 98개의 버킷리스트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군부독재에 맞섰던 스무 살의 청년처럼 열정으로 가득한 김현 회장의 버킷리스트를 <연동> <사랑>이 들춰보았다.

99

Q | 올해 3월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취임 하셨습니다. 재임기간 동안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무려 98개에 달한다고 들었는데, 이미 11 가지를 달성하셨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무엇입니까?

A | 올해 3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제조물 책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버킷리스트 제 1호를 달성했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과실이 아닌, 고의로 하자 있는 제품을 만들어 피해를 준 기업주가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판매 중 제품의 맹독성을 알게 되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계속 판매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사실 피해액의 3배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도 수인할 수 있는 금액이며, 주 의의무를 다하여 제품을 만들 것이므로 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조계 현안이 두루 담긴 98개의 버킷리스트

를 집무실에 걸어놓고 매일 확인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죠. 리스트를 볼 때마다 '아직도 할 게 많이 남았구나' 생각합니다.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2년의 임기 동안 꾸준하고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우리 법조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Q | 남은 87개의 리스트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 법조인 양성제도가 로스쿨로 일원화된 이후 연 1600명이 새로 변호사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규모 및 법률시장 규모와 현재 변호사 숫자를 고려하면 신규로 배출되는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변호사 과잉공급은 변호사들을 무한경쟁으로 몰아 수임경쟁과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하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게 되고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질이 도리어 악화되어, 사법 불신을 야기할 것입니다.

변호사 수급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되는데, 무엇보다 생활 속 법치실현이 중요합니다. 취임 후 국회를 수시로 방문해 준법지원인과 법무담당관 제도, 아파트감사제도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변리사, 세무사 등 유사 직역에 의한 변호사 업무영역 침해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조인이 기업의 준법지원인이 되면 경영인은 법률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기에 경영은 투명해질 것이고 그 이익은 투자자와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아파트감사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내고 있는 관리비가 적정인지 알지 못하며, 많은 관리비가 부정하게 내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감사를 맡아 관리비를 감시하고 절약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변호사가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셨는데 사법연수원이 아닌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무슨 사연이라도 있었던 건가요?

A | 유신 군부독재 시절인 1977년 법대 2학년 때 군사독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불의라 생각했고 학내 집회에서 앞에 나가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사회를 바로잡겠다는 소박한 법학도의 정의감을 가지고 있었죠. 이 때문에 6개월 유기정학을 당했습니다. 이후 1980년 행정고시 2차와 1982년 사법시험 2차에 합격했지만 학생운동 이력이 문제 돼 3차 면접에서 모두 불합격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고 절망했던 시기였죠.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결국 눈물을 머금고 미국 유학길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이후 은사님의 도움으로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해 법조인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힘들어 제 행동을 후회한 적도 있지만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과 배짱을 가지게 됐고, 정의는 언젠가는 승리한다는 교훈도 얻었습니다.

Q | 당시 절망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 제 아버지(故 김규동 시인, 1925~2011)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함경북도가 고향인 아버지는 가족과 고향을 다 잃으셨죠. 아버지가 할머니께 3년만 공부하고 돌아오겠다며 스승 김기림 시인을 만나러 서울에 오셨는데 2년 뒤 한국전쟁이 나버린 것이죠. 평생 고향과 가족을 애타게 그리워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구나 생각했죠. 아버지는 빈손으로 시인이 되어 일가를 세우고 삼형제도 잘 키우셨는데, 부모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한 내가 못할 게 무엇인가 싶었습니다.

주위에 도움을 주는 분들도 많았어요. 은사님 이자 '국내 1호 해상법 외국박사' 송상헌 교수님께서 제가 사법고시 면접에서 낙방했을 때 탄원서를 들고 당시 정부 실세를 쫓아다니며 설득해 주셨고, 해외유학을 추천해 제가 해상법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저

당부

김규동

가는 데까지 가거라
가다 막히면
앉아서 쉬거라

쉬다보면
보이리
길이

는 한국인 중 두 번째로 해외에서 해상법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Q. 해상법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변론 사건은 무엇인가요?

A | 해상법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각종 해상사고 분쟁과 국가적 재난 대응 등 각종 해상 관련 법률자문을 도맡아 해왔습니다만,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청해진해운 사업 면허 취소 판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직후, 인천지방법해양항만청이 해운법 위반을 이유로 청해진해운의 인천-제주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한 데 이어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서도 여수-거문도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청해진해운은 통상 면허는 각각 독립적이어서 보유자가 동일하더라도 취득·취소는 별개로 이뤄진다는 점을 근거로 그해 8월 광주지법에 여수-거문도 운송사업 면허를 회복시켜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이 소송의 해수부 측 대리인을 맡아 해수부의 승소 판결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애초의 계획대로 청해진해운의 모든 여객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월호 피해자 가운데 348명의 피해액 산정 업무를 맡았고, 세월호 선체인양을 위한 법률자문을 지원했습니다. 그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같이 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Q | 변협회장님께서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 사심위원회를 비롯하여 각종 위원회의 위원 지

명 및 추천 권한을 갖고 계시죠. 이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A |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대한변협의 협회장이 이해관계나 사사로운 인연으로 위원 지명이나 추천을 하는 일은 경계하고 피해야 할 것입니다. 널리 인재를 구하고 인품과 능력, 평판, 해당 분야 사건의 경험 등을 두루 검증하여 위원 임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분을 추천하고, 그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변호사들이 극심한 취업난과 수임 한파 속에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년변호사들이 하나의 기회를 바탕으로 더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Q | 변호사 업계를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언론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없으신지요?

A |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전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여러분이 쓴 기사가 다 마음에 들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비판적 시각을 던지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고 그로 인해 백안관도 책임감을 갖고 일하고자 했다. 감사하다'라고 말했더라고요. 저 역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오해와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그러한 목소리도 존중합니다. 좀 더 다양한 여론을 청취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고자 노력합니다. 언론의 날카로운 비판이 저를 더욱 깨어있게 만들 것이며 대한변협을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국민들께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49대 집행부 취임 이후 대한변협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회원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더 열심히 일하며 옳은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은 법원 및 검찰과 동반자적 관계에서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여 법조개혁의 목표를 달성할 것이며,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진행 양재규 (홍보팀장) 정리 염아영 (에디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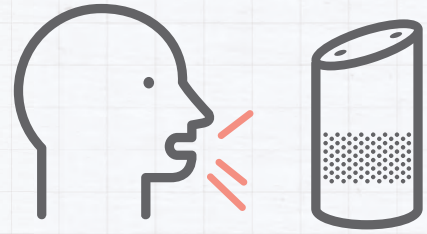
성큼 다가온 오디오 퍼스트 시대

‘보이스 퍼스트’(Voice First)라는 표현이 생소한가? 그 생소함은 지겨움으로 곧 돌변할지도 모른다. 오디오 콘텐츠가 뉴스 산업에 침투하는 속도가 그만큼 빨라서다. 네이버는 지난 8월 AI 스피커 ‘웨이브’(wave)의 소비자 수용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마케팅 이벤트를 진행했다. 웨이브의 배포 물량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 온라인 이벤트는 불과 35분 만에 종료됐다. 웨이브를 손에 넣지 못해 아쉬움의 탄식을 내뿜는 글이 페이스북 이곳저곳을 뒤덮었다. AI 스피커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갈망과 기대를 가늠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아마존의 AI 스피커 ‘에코’(Echo)는 출시 이래 2017년 5월까지 전 세계 1000만 대 이상이 팔렸다¹⁾. 약 3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에코를 통해 서비스되는 앱(이를 ‘스킬’이라고 한다)도 1만 5000개²⁾를 넘어서었다. AI 스피커를 중심으로 구축된 오디오 콘텐츠 생태계는 안정적인 성장 단계에 진입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언론사들의 준비 상황

‘보이스 퍼스트’ 국면 앞에서 글로벌 언론사들의 경쟁도 치열하다. BBC, NPR, CNN 등 전통 방송사를 비롯해 버즈피드와 같은 뉴스 스타트업도 AI 스피커 전용 뉴스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가운데 BBC는 굳게 일확이다. ‘Talking with Machines’³⁾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2016년 출범시킨데 이어, 특정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는 별도의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까지 준비를 완료한 상태다. 국내 언론사들은 아직 관망하는 분위기다. 네이버의 웨이브, 카카오의 카카오톡이 정식 출시되지 않은 탓도 있다. 아마존 에코나 구글 홈이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 당연히 그것의 파괴력을 실감하기엔 이른 시기다. 당분간은 팟캐스트에 주력하며 오디오 콘텐츠의 확대를 꾀하는 모양새다.

사실 AI 스피커는 언론사들에게 도전적 과제다. 대화형 사용자 인터페이스(Conversational UI)에 익숙하지 않은 데다 이를 전담할 인력을 갖춘 곳도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기에 음성이라는 레이어가 추가로 올려지면 콘텐츠 제작의 변수는 더욱 늘어난다. 사용자의 질문에 따라 제공하는 뉴스의 내용과 유형이 바뀌어야 하고, 개별 사용자의 뉴스 소비 성향을 추적해 관심별로 뉴스를 요약해낼 수도 있어야 한다. ‘사용자와 대화하며 뉴스를 음성으로 제공한다’는 개념은 설계 단계부터 복잡한 함수식



을 도출해 풀어낼 역량도 요구한다. 표적 독자들의 상황적 맥락을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정보를, 신뢰감을 더한 목소리로 짧은 시간 안에 읽어줘야 한다.

반면 독자들은 즐겁다. 매일 아침 스마트폰을 열지 않고도 ‘알렉사, 오늘 뉴스’라는 명령만 내리면 그날의 주요 뉴스의 헤드라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더 깊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지원되는 명령어를 음성으로 실행하기만 하면 된다. 뉴스를 퀴즈 형태로 소비할 기회도 열리고 있다. 이를테면, 뉴스에 등장하는 용어의 설명, 이를 기반으로 하는 퀴즈 서비스도 언론사들이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범주다. 참고로 아마존 에코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스킬은 퀴즈쇼인 ‘제오파디 j6’⁴⁾라는 사실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AI 스피커와 뉴스의 미래

벤처비트라는 테크놀로지 전문 미디어는 최근 AI 스피커용 콘텐츠의 5가지 특징⁵⁾을 추려 소개한 적이 있다. 여기엔 ‘사람과 1:1로 대화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항목이 포함돼있다. 여기에는 적지 않은 과제가 함축돼있다. 언론사들에게 익숙한 정보의 일방향적 전달 방식은 보이스 퍼스트 시대엔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문자적 사고에 갇힌 인쇄신문사들은 구술 중심의 오디오 콘텐츠를 상호작용적으로 풀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 복잡한 미디어 환경의 변동 속에서 신뢰를 구축하기란 더 지난한 과제일 수 있다.

뉴스는 분명 AI 스피커 시대에도 살아남을 것이고 더 많이 소비될 것이다. 하지만, 소비되는 콘텐츠는 AI 스피커가 설치되는 시간과 공간의 맥락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부엌에서 요리할 때 듣고 싶은 정보와 침실에서 자기 전에 확인하길 기대하는 정보는 당연히 달라지게 된다. 그럴 때마다 사용자들은 상황에 부합하는 언론사의 정보를 탐색하게 될 것이다. 늘 그렇듯 그 몫은 기성 언론사가 될 수도 있지만,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신생 언론이 될 수도 있다. 위기와 기회라는 진부한 표현이 다 시금 반복되는 까닭이다.

1) <https://www.geekwire.com/2017/amazon-passes-10m-alexa-powered-echo-devices-sold-survey-says-with-more-models-on-the-way/>
 2) <http://www.businessinsider.com/amazon-alexa-how-many-skills-chart-2017->
 3) <http://www.bbc.co.uk/rd/projects/talking-with-machines>

4) <https://turbofuture.com/consumer-electronics/The-20-Best-Alexa-Echo-Skills-in-the-Alexa-App>
 5) <https://venturebeat.com/2017/05/21/how-to-get-conversational-ui-right/>

어떻게 먹어야 마음 건강에 좋은까



먹는 것은 생명 유지에 중요하고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굶주림을 해결하려는 노력 속에서 인류의 문화가 한 단계씩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현대에는 굶어 죽는 사람보다 비만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스트레스를 폭식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폭식으로 이어지는 까닭은 호르몬의 시간차 때문입니다.

뇌의 시상하부에서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 중 하나인 CRH가 나오는데, 이 CRH는 의외로 식욕을 떨어뜨립니다. 우리가 큰 충격을 받은 순간이나 다른 사람과 싸우고 있거나 큰 시험을 치르며 긴장을 하는 등 스트레스가 심할 때 뭘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바로 CRH가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버틸 수 있도록 계속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욕을 떨어뜨리는 CRH는 자기 혼자서 일을 하지 않고, 당질코르티코이드에게 일을 시킵니다. 명령을 내린 장본인 CRH는 15~20분 만에 잼싸게 퇴장하고, 뒤늦게 등장한 당질코르티코이드가 몇 시간 동안 활동을 하는데, 문제는 이 녀석이 식욕을 돋운다는 점입니다. 물론 두 호르몬이 함께 높은 시기도 있겠지만,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될 때 마구 먹게 되는 것은 식욕을 높이는 당질코르티코이드만 오랫동안 남아있기 때문이죠. 하루 종일 자잘 자잘하게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경우 식욕은 계속 높은 채로 있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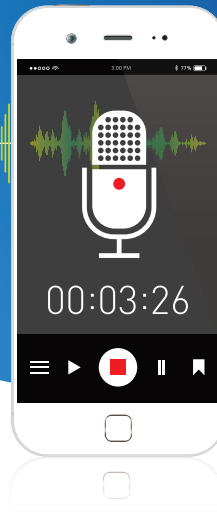
반면 불안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위와 장의 운동은 정지되고 맙니다. 사실 음식을 소화한다는 것은 영양분을 저장하고 앞날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 지금의 위험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자가 나타나서 도망가는 얼룩말에게 앞날을

대비할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편한 상사와 밥을 먹거나 시댁 식구들이 자꾸 잔소리하면 밥이 안 넘어간다는 것은 이런 까닭입니다. 불안이 높은 상태에서 위장은 알아서 일을 멈춰 버립니다. 그러니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면 명치부터 답답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요.

참 이상하게도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식욕은 높은 데 반해 위장의 운동 능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숲속에서 뱀을 마주한 것처럼 한 번의 큰 충격을 받아 식욕도 없고 위장 운동도 하지 않는 상태가 나을 지도 모릅니다. 경쟁이 끝나지 않고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하는 이 세상에서 스트레스는 지속되기 마련입니다. 긴장이 연속되는 상황에서는 소화하기 좋으면서도 혈당은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것, 초콜릿과 같이 단 음식이나 아주 일시적으로나마 위장 운동을 촉진하는 매운 음식 등의 인기로 이어집니다. 위장이 준비된 상태에서 힘겹게 소화시켜야 하는 거친 음식이 아니라 쉽게 흡수될 수 있도록 설계된 빠른 음식이니까요. 패스트푸드는 조리하는 과정이 빠른 것뿐만 아니라 몸에 흡수도 빠릅니다.

무조건 먹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은 힘듭니다. 배고프고 힘이 없을 때는 먹는 것이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몸이 왜 '단짠단짠'을 찾는지, 어쩌서 토할 것 같은데도 폭식을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는 먹더라도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당장은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야생동물에 비만이 없는 것은 의지를 갖고 식욕을 조절하기 때문이 아니라 땅에서 나온 음식을 한 번에 한 종류만 먹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풀거나 너무 여러 가지의 음식을 먹는 습관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악인이 진실해지는 시간



사람은 말을 바꾼다. 아무도 없는 곳, 오직 단 둘이 만나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진실을 이야기한다. 그러다가도 여러 사람이 쳐다보는 곳에서는 시치미를 떤다. 법정이나 국정조사장에 증인으로 나와 말 바꾸는 사람들을 우리는 술하게 보고 있다.

지난 7월 20일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통화녹음 알람 법안')을 두고 요즘 말들이 많다. 개정안의 내용은 간단하다. 통화를 녹음하는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SK나 KT, LG와 같은 통신사에서 구축하라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콜센터 통화녹음 알람멘트와 같은 원리"라며 개정 의도를 가볍게 설명했다. 그런데 법안에 반대하는 측은 상당히 심각하다. 한 시민단체는 비리의 노출을 원천봉쇄하고 약자의 고발 무기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규정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통화녹음 알람법안'은 통화 녹음의 합법성 유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먼저, 요즘 유행하는 팩트체크부터 해보자. 많은 언론에서 '통화녹음 알람법안'을 다룰 때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 녹음 금지'를 근거로 들고 있다.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 녹음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대화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처벌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번 개정안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문제 되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통신'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잘 살펴보면, 이 법에서 다루는 대상은 '통신'과 '대화'이며 이 두 가지를 엄격히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신'은 원거리에 있는 당사자 간 유무선 전화나 이메일, 팩스 등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이고 '대화'는 당사자 간 육성으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

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휴대폰 통화는 '통신'이지 '대화'가 아니다. 따라서 타인 간 대화 녹음만 처벌한다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이번 사안과 무관하다.

그러면 휴대폰 통화가 '통신'이라고 전제할 때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처벌대상일까.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우선, 육성 대화의 녹음에 관해서는 '타인 간'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으나 전기통신의 경우에는 '타인 간'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있지 않으므로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육성대화보다 전기통신에 대하여 보다 강한 경각심을 가지고 넓게 규제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라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육성대화인지 전기통신인지와 같은 의사소통의 형태에 따라 통신자유 보장이 차등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있다. 타인 간 대화만을 처벌한다면 전기통신에서도 당연히 타인 간 통신만을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다. 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대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비밀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97도240). 간접적으로나마 판례 역시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적법하다 보는 것이다.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증거'다. 그런데 사람은 말을 바꾼다. 만일 지금 내 휴대폰으로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늘이 내게 준, 어쩌면 범행을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 기회마저 놓치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닐까.



법과 밥

사내가 밥을 노려봅니다. 밥도 말없이 사내를 쳐다봅니다. 사내는 이내 눈길을 거둡니다. 어린아이들이 밥을 바라봅니다. 아내는 사내와 밥과 아이들에게 번갈아 시선을 나눕니다. 국물만 후루룩 마신 사내는 주섬주섬 가방을 챙겨 출근합니다. 그제야 여섯 살짜리 아들과 세 살배기 아이가 남겨진 밥을 먹습니다. 밥의 양은 가난해서 아내 역시 밥 대신 옥수수죽을 입에 넣습니다. 뒷밭에 키운 푸성귀를 삶아 먹기도 합니다. 다음 날도 사내는 밥을 노려보기만 할 뿐, 손가락을 들지 않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사내의 몸은 여기 저기 탈이 났습니다. 장인이 사내와 아이들을 초대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며칠 후 장인이 다시 사내를 불렀습니다. 이야기나 하자며, 장인의 의도를 알아챈 사내는 가지 않았습니다. 일 년 전 가을밤부터 사내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부슬부슬 비가 내리던 새벽. 일흔두 살 노파가 집을 나섭니다. 배를 굶은 두 손자는 잠에 빠져 있습니다. 마흔 살에 낳은 할머니의 늦둥이 아들은 전쟁터에서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머느리는 비행기 폭격을 맞아 죽었습니다. 손자들을 먹일 것이 없었습니다. 식량을 구하려 어두한 새벽시장에 달려가 줄을 섰습니다. 시장에서 식량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숨을 죽인 사람들이 낮은 목소리로 암시장의 식량을 팔고 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죽순 껍질을 벗기듯, 자기 몸의 옷을 한 겹씩 차례차례 벗어 팔아 식량을 샀습니다. 할머니는 불잡했습니다. 법정에서 끌려 온 할머니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식량관리법 위반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판사에게 처지를 설명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법정에서 끌려 나가던 할머니가 외쳤습니다. “판사님, 무엇을 먹기에 당신은 살아 있습니까? 설마 귀신은 아니겠지요!”

밥을 먹지 않고 출근한 사내의 업무는 과중했습니다. 하루 100건 이상의 일을 처리했습니다. 1947년 8월 27일 저녁, 퇴근하던 사내는 계단에서 쓰러졌습니다. 도코지방법원 형사재판부에 근무하던 아마구치 요시타다 판사였습니다. 아마구치 판사는 1942년부터 도코민사지방법원에 근무했습니다. 1946년 10월 초 경제사범 전담부 판사로 배치되었습니다. 암시장에서 쌀 거래를 하다 검거된 피고인들을 담당하는 것이 주 업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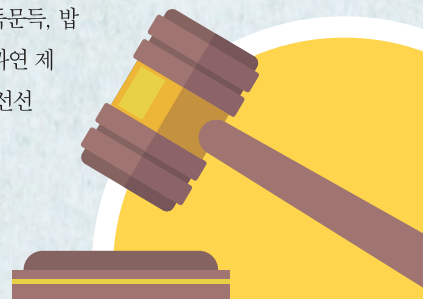
손자들을 먹이려고 암시장의 쌀을 사다 잡힌 시노자키 카쿠 할머니에게 징역을 선고한 판사가 그 사내였습니다. 새로 부서 배치를 받자마자 할머니와 조우했던 것입니다.

할머니를 징역 보낸 날, 집에 돌아온 아마구치 판사는 아내에게 더 이상 암시장의 쌀을 먹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쓰러지거나 굶어 죽을지 모른다고도 말합니다. 양심을 속이며 연명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배급받은 쌀도 아이들을 먹이는 데 돌렸습니다. 사내는 밥으로 몸을 채우는 대신 법으로 양심을 먹여 살렸습니다. 1947년 10월 11일, 우리 나이 서른다섯 살에 그의 몸은 죽었습니다. 영양실조에 동반한 폐결핵이 사인이었습니다. 아사히신문에 그의 죽음이 특종 보도되자 한 잡지사 사장이 24개의 계란을 싸들고 도코법원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이 키운 닭들로부터 거둔 달걀이라며 더 이상 판사들이 굶어 죽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유고가 된 일기에 사내는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썼습니다. 해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몰래 쌀을 샀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사내는 식량관리법을 악법이라고 적었습니다. 국민을 굶겨 죽이는 법이라고 봤습니다. 암시장의 쌀 거래를 전담 처벌하는 판사가 암거래한 쌀밥을 먹을 수 없다고 기록했습니다. 불법의 쌀로 배를 채우면서 아닌 척 암거래 피고인을 벌주는 판검사, 변호사의 위선도 짚었습니다. 모두가 아니오, 할 때 자신은 법과 양심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신의 나라에 살아 있는 양심이 있어 기쁘다는 내용도 일기에 남겼습니다. 아마 도쿄고등학교 독일어 선생 가메오 에 이시로를 두고 한 말 같습니다. 가메오 선생은 사내보다 앞서 아사했습니다. 암시장의 불법한 쌀을 먹으며 제자들에게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키라고 가르칠 수 없었던 선생은 일각일각 저며 드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법을 버리고 밥을 취하는, 더 많은 밥을 벌기 위해 고교히 법을 버려서 악용하는 불행한 시대라 일컬어집니다. 살충제 계란 공포가 광범하고 법원을 걱정하는 소리도 높고 깊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조의 역사에는 기려야 할 훌륭한 법조인들이 많이 기록돼 있습니다. 세세히 거명하기 뭉힙니다만, 자신의 밥과 가산을 털어서 나라와 시민과 인권을 지키는 데 혼신을 다한 분들입니다. 법을 파수하느라 노후에 정작 자신의 밥을 구하지 못한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법을 지켜내려 애쓰던 대표 법조인은 굶어 죽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자고 말했습니다. 서서히 다가오는 밥의 죽음을 견뎌내는 아주 견고하고 분명한 법의 가치를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은퇴하신 은사님 한 분은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죽을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공부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한두 끼 끼니를 거르는 것조차 버거운 저는 법보다 밥 걱정이 더 큼니다. 아주 문득문득, 밥을 버리고 지켜야 할 신념이나 가치를 과연 제가 가지고 있는지 질문해 봅니다. 벌써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부족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Don't look
back
in anger

잘 되어가던 조정이 별안간 파투 분위기로 전환되는 때가 있다. 피신청인이 조정대상기사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던진 말이 신청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순간이다. 던져진 말에 의도가 있고 없고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일단 마음이 상하면 신청인은 양보 없는 투쟁으로 돌입한다. 이렇게 양보와 타협의 공간을 상실한 조정은 보통 감정의 앙금만 남긴 채 성과 없이 끝난다. 그날, 합의로 종결되었어야 할 추후보도청구 사건이 직권조정결정을 거쳐 신청인의 이익으로 법원까지 가게 된 것도 피신청인 대리인의 의도하지 않은 말에 상처받은 신청인의 자존심 때문이었다.

수화가 너무도 들려온 목소리는 걸걸하고, 크고, 당당했다. “거기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지부요?” “지부? 지부요? 아... 경기사무소입니다.” “그래 사무소, 거기가 어디였지?” “경기문화재단 8층에 있습니다. 전화로 상담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라. 아니라. 내가 갈 테니까 조금 이따 보자고.” “선생님, 선생님?” “... 뚜뚜뚜...” 민원인은 본인의 간단한 궁금증이 해소되자 바로 전화를 끊었다. 몇 시간 후 사무실에 나타난 분은 건장한 60대 후반의 남성이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남자 스타일.

민원인은 책상 위에 여러 문서를 펼친 뒤, 흠, 흠, 하며 크게 한 번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리고는 “내가 장군까지 한 사람인데 이런 횡령이나 했겠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라고 말하며 문서 하나를 내밀었다. 불기소이유 통지서. 추후보도청구니 쉽게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으나 비고란을 보는 순간 불안의 씨앗이 숨겨져 있음을 느꼈다. “비고란에 ‘일부 업무상횡령의 점은 약식 명령청구’라고 되어 있네요.” “그게 내가 카드를 혼동한 건데, 실수한 부분이 있어.”

민원인은 모 단체 경기지회장 재임 시 사용한 법인카드와 관련해 횡령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그런데 횡령의혹이 제기된 수천만 원 가운데 대부분은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일부 소액에 대해서만 잘못 사용된 것이 인정된 모양이었다. 민원인도 그 부분은 아주 쿨하게 본인의 실수라고 인정했다. 역시 상남자.

중착역에 다다르던 합의가 탈선하기 시작한 것은 피신청인 대리인이 그 소액에 대해 지나가는 말을 하면서였다. “일부 소액이라도 혐의가 인정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별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피신청인 측도 추후보도를 해주려는 입장이었고, 신청인이 계속 주장하는 사과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보도문에 넣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 소액 발언은 신청인의 감정선을 건드렸다. “그럼 추후보도문에 그 소액에 대해서도 넣자고. 맘대로 해. 내가 손해배상은 받아야겠어.” 그 이후 조정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결국, 중재부는 당시까지 합의된 문구 수준에서 보도를 명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 신청인의 감정이 조금 가라앉으면 수용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신청인은 감정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는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나는 그해 마지막 날 도착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다.

사건을 잊고 지낼 즈음, 나를 찾는 전화가 왔다. “최 소장님입니까?” “네, 접니다. 누구신가요?” “나, ○○○입니다.” “네? 누구...” “그 왜... 그 사건. 법원에 갔는데...” “아, 안녕하세요.” 힘없는 목소리에서 바로 그분을 떠올리지 못했지만, 몇 마디 주고받다 보니 당당하던 그 목소리가 떠올랐다. “근데, 어떤 일이에요?” “아니 법원에서... 그... 중재위원회보다 안 해주면 어떡해.” “결과가 안 좋으신가 보네요. 근데 이의신청한 건 신청인이시죠?” “그건 그렇지... 그래도... 어떻게...” “그러게 고민 잘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방법이 없는 건가?” “그럼요. 법원의 결정이 최종적인 것이죠.” “... 알겠어요.” 그날의 감정이 이제야 가라앉았는지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다.

조서관으로 심리에 참석해 당사자의 표정을 살피다 보면 의도치 않은 장면에서 당사자들이 자존심에 상처 입은 표정을 짓는 순간을 보게 된다. 상대방의 의도하지 않은 말에 스스로 부딪혀 만들어 낸 상처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 상처의 이유를 안다. 그 때가 조금 늦을 뿐.

입은 하나고 귀는 둘인 이유

- 영화 <맨체스터 바이 더 씨>로 보는 침묵의 힘 -

‘때로는 침묵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는 말, 얼마나 동의하시나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날 배우자에게 해외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는데 배우자가 “안 돼, 반대야. 싫어!”라며 거절하는 것과 그 저 “음...”하며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다르게 다가옵니다. 전자는 제안한 사람이 반발심마저 들게 하는 반면 후자는 상대방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하며 생각하게 하지요. 경우에 따라 침묵은 그 자체로 강력한 설득의 기술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 침묵 속에서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는 영화 <맨체스터 바이 더 씨>가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자식을 모두 잃은 주인공 리와 심장마비로 아버지를 잃은 조카 패트릭이 말없이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이야기이지요. 사실 영화는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만큼 대화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을 섬세하게 담아냈습니다.

영화 속 가장 긴 침묵은 조(패트릭의 아버지이자 리의 형)가 죽은 뒤 유언장을 확인하러 리가 변호사를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조는 유언장을 통해 패트릭의 후견인으로 리를 지명했지만, 고향에서 경험한 아픈 기억 때문에 리는 이를 원치 않습니다. 이때 변호사는 침묵한 채 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빨리 결정하라고 다그치거나 어떤 방향이 옳다고 제시하지도 않지요. 18세기 프랑스의 한 신부가 쓴 <침묵의 기술>이라는 책에서는 이런 침묵을 “때와 장소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뜻으로 입을 닫는 신중한 침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침묵의 기술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선, 내가 침묵함으로써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털어놓습니다. 동시에 나는 말을 너무 많이 함으로써 불필요한 정보를 쏟아내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침묵의 기술>에 언급된 침묵의 제1 필수원칙, “침묵보다 나은 할 말이 있을 때에만 입을 연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

는 상황이네요.

두 번째로 침묵은 강력한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간혹 상대방에게 질문해놓고 상대가 고민하고 답하기 전에 먼저 답을 해버리기도 합니다. 상대가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을 해올 때, 바로 해답을 던져주기보다는 잠시 침묵해 보세요. 상대방은 계속해서 문제 해결에 대해 고민해왔기 때문에 더욱 적절한 해답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침묵은 그 자체로 나와 상대방의 관계가 편안하다는 시그널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상대방과 내가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은 서로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대화 당사자 사이에 라포르를 형성했다’고 말합니다.

영화 말미에 조의 장례식을 마치고 서로 다른 곳에서 살아가기로 결정한 두 주인공이 함께 길을 걷다 패트릭이 아이스크림을 사서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둘은 짧은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을 뿐 그저 묵묵히 걸어갑니다. 침묵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따뜻한 장면이지요.

아, 물론 침묵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겠지요?

랜디(패트릭의 여자친구)의 엄마: 잠시 실례할게요.

리: 네...

랜디의 엄마: (딸의 방으로 올라가서 하소연함) 더 이상 저기 못 앉아 있었어.

랜디: 왜? 뭐가 문제야?

랜디의 엄마: 말을 안 해. 30분 동안 얘기하려고 노력했어. 내가 매력 없는 사람이란 건 알고 있지만 너무 불편해

시종일관 진지하게 영화를 보다가 저 장면에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어색한 사이의 침묵은 상대를 불편하게 하거나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적당히 침묵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림 속에 살아 숨 쉬는 조선의 여인들



간송미술관이 소장한 해원 신윤복 미인도. 조선시대 여성을 표현한 그림 중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다.

우리 선조들은 산수화를 인물화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인물화의 비중이 꽤 큼니다. 그 까닭은 동양이 자연을 경외시켰기 때문입니다. 자연을 신령한 대상으로 보고, 자연을 받들어 모셨기에 산수화 또한 중시했던 거죠. 반면에 서양은 '자연이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파워풀한 인물화들이 많이 그려졌습니다.

그렇다고 조선 시대 인물화 전통이 빈약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비록 전수에 밀려 홀대받긴 했어도 오늘날 전해지는 옛 인물화는 꽤 많습니다. 특히 조선 중후반에는 초상화가 러시를 이뤘지요. 왕의 초상(御眞)은 궁중화원 중 최고의 화원이 반복해 그렸습니다. 나라에 혁혁한 공을 세운 신하에게, 임금은 화원을 불러 초상을 그리게 한 뒤 하사했습니다. 특별한 하사품이었지요. 그러자 지체 높거나 재력 있는 집안에서도 유명화가를 불러 앞다퉈 초상화를 그렸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초상화에서 여성을 그린 초상화는 매우 드뭅니다. 왕비의 초상쑈은 그럴 법도 한데 "남녀가 유별한데 왕비와 화원(남성)이 함께 있어서 되겠느냐"는 유학자들의 반대로 무위에 그쳤더랬죠.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나마 전해지는 여인 초상화들은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조선 시대 여성의 지위와 생활상, 복식, 화장법을 가늠케 하는 귀한 자료이니까요. 해원 신윤복의 '미인도'가 특히 그렇지요. 여성을 전면에 내세운 그림이 드물던 시대에, 화면이 꽉 차도록 여성을 그려낸 시도는 그야말로 파격이었습니디. 조선 시대 미인의 기준을, 구구한 설명 없이 '한 큐'에 제시하는 그림이기도 하고요. 동그란 얼굴에 작은 아래턱, 쌍꺼풀 없는 눈과 앵두 같은 입, 풍만하게 부풀어 오른 치마 밑으로 살짝 내민 버선발은 언제 봐도 매혹적입니다.

고개를 숙인 채 삼작노리개를 만지작거리며 어딘가를 응시하는 눈에선 그리움과 애절함이 묻어나네요. 여인의 머리는 트레머리, 저고리는 삼회장저고리입니다. 저고리는 터질 듯 작은데, 치마는 배추처럼 풍성해 대비를 이루고 있군요.

해원 신윤복의 '미인도' 이후 여러모로 흡사한 '미인도'들이 전해집니다. 그중에서도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미인도'(작자 미상)는 신윤복 그림과 인물의 포즈와 복식이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해원의 여인은 애뜻한 표정인 데 반해 도쿄의 '미인도' 속 여인은 살짝 미소를 머금고 있어 분위기가 확연히 다릅니다. 트레머리와 얼굴 묘사도 섬세함이 부족해 보이는군요.

전남 해남 녹우당에도 유사한 '미인도'가 현존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여인의 트레머리가 얼굴에 비해 너무 커서 부담스럽습니다. 트레머리를 받치고 있는 포즈는 좀 역동적이네요. 이 두 '미인도'를 보면 해원이 얼마나 천재였는지 알게 됩니다. 여인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쌓인 정한까지 살포시 표현해낸 것을 보니 말입니다.

조선 시대 여인을 그린 초상화 중 의기(義妓)로 추앙받는 계월향(?~1592)을 그린 그림도

돋보이는 초상화입니다. 계월향은 1592년 임진년에 평양성이 함락되자 정인이었던 김경서 장군을 성안으로 불러들여, 적장의 '오른팔이었던 고니시 히의 목을 베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 암살로 조선은 평양성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계월향은 현장에서 죽고 맙니다. 그림 상단에 적힌 긴 글이 그녀의 처절했던 최후를 알려줍니다. "김경서가 왜장의 머리를 들고 나오는데 계월향이 옷을 잡고 따랐다. 둘 다 빠져나오기 어렵게 되자 김경서는 칼을 들어 그녀를 쳤다"라는 글입니다. 이 그림은 계월향 사후 223년 후(1815년)에 그려진 초상화여서 글의 사실여부는 확인키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거사를 마치고 연인의 손에 의해 최후를 맞은 계월향을 의연하게 표현한 숨씨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림 속 계월향은 앓된 얼굴이지만 양 다문 입이 결연함을 말해주는군요. 계월향의 손에 검은 수건이 들려져 있는 것도 이채롭습니다. 여차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말해주는 걸까요? 가슴에 매단 노리개에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뜻의 '제계'(齋戒)가 새겨져 있어 보는 이를 숙연케 합니다.

마지막으로 채용신이 그린 모자상을 감상해보지요. 채용신은 조선 말을 품기했던 최고의 초상화가로 이 그림에서도 실력을 마음껏 뽐내고 있습니다. 그림 속 주인공은 27세의 아기엄마 윤낭자입니다. 평안도가산 관청의 관기(본명 최연홍, 1785~1846)였으나 '홍경래의 난' 때 살해된 가산군수의 장례를 치르고, 군수의 아유를 보살핀 공로로 기생 신분을 벗고 토지까지 하사받았습니다.

시원스러운 이마가 돋보이는 여인은 가슴골이 다 보이는데도 당당하게 아들을 안고 있군요. 채용신은 윤낭자 스토리에 반해, 여인 사후에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비록 낮은 신분이었지만 인간의 도리를 다했던 여인은 오늘 이렇게 우리와 만나고 있습니다. 의연한 모습으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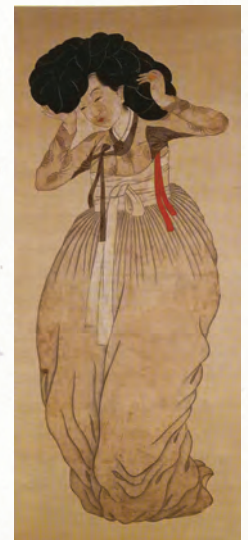
적자미상, 미인도, 1825년경, 종이에 담채, 114x56cm. 도쿄국립박물관



조선조 의기 계월향 초상. 사후 200년 후인 1815년에 그려졌다. 국립민속박물관



채용신 윤낭자 초상. 국립중앙박물관



해남 녹우당에 소장돼 있는 적자 미상의 미인도. 커다란 가발을 손으로 받들고 있는 형상이다.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보·보물 초상화 베스트3 |



윤두서, 심득경 초상. 보물 1488호



이명기·김홍도 합작, 서직수 초상. 보물 1487호



적자 미상, 송시열 초상. 국보 239호

터럭 한올까지 세밀하게 그린 조선조 최고의 자화상의 작가 공재 윤두서(1668~1715)가 요절한 친구를 애도하며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보물 1488호인 '심득경 초상'은 부드러운 필치로 인물의 인품까지 담아낸 것이 특징입니다. 초상을 본 가족들은 죽은 이가 되살아난 것 같다고 감격했다는군요. 중앙의 그림은 궁중화원으로 이름을 날렸던 이명기, 김홍도가 합작한 '서직수 초상'(보물 1487호)입니다. 깊고 형형한 눈빛이 인상적이고, 깨끗한 품모도 일품이네요. 오른쪽 인물화는 주자학의 대가 '송시열 초상'(적자미상)입니다. 송시열의 초상화 중 뛰어난 수작으로 평가돼 국보(239호)로 지정됐습니다. 평상복 차림의 대학자를 사실적이면서도 깊이 있게 표현해 그 이미지를 잘 살려낸 것이 특징입니다.

COMMISSIONERS >>> 위원동정



주정민 · 황용석 위원,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구반 참여

주정민 중재위원(광주중재부,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과 황용석 중재위원(서울제3중재부,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이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구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연구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사업자별로 규제하는 합산규제 방식의 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구성하였으며, 8월 22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향후 연구반은 규제의 유지 또는 폐지, 규제 수준 조정, 대안 마련 등 각 정책방안별로 심층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승선 위원, <방송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송규제의 현안과 법적 쟁점> 세미나 발제

이승선 중재위원(대전중재부,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이 8월 25일 <방송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송규제의 현안과 법적 쟁점>을 주제로 열린 한국언론법학회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실시의 법적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세미나에 앞서 진행된 제16회 철우언론법상 시상식에서는 경기대 윤성옥 교수의 논문 <방송광고 표현의 보호와 규제의 법리: 헌법재판소 결정문 분석을 중심으로>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NEWS >>> 위원회 뉴스

2017년 임시총회 개최, 양인석 신임 언론중재위원장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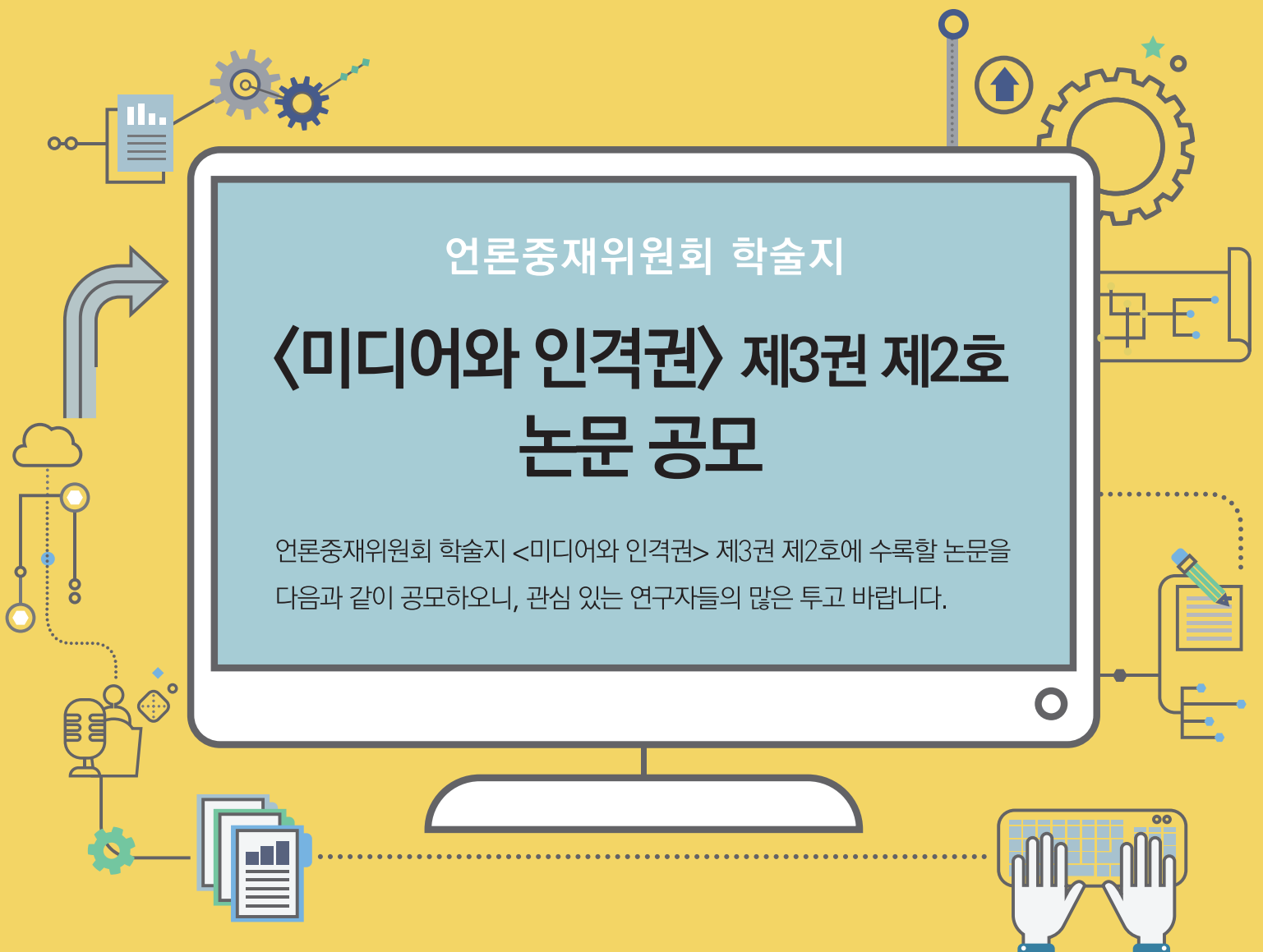
위원회는 8월 28일 위원총회를 열고 양인석 위원(서울제4중재부, 변호사)을 언론중재위원회 제15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양 위원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고법 부장판사, 감사원 감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날 위원총회에서는 위원장 외에도 부위원장, 감사 및 운영위원을 선출하여 임원진을 새로 구성하였다. 부위원장에는 황병선 위원(서울1중재부,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과 송중문 위원(대전중재부, 전 중앙일보 이사)이, 감사에는 이희영 위원(서울제2중재부, 변호사)과 민말순 위원(경남중재부, 전 창원YMCA 이사장)이 각각 선출됐다. 운영위원 9명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성명	중재부	대표이력
위원장 양인석	서울제4중재부	서울고법 부장판사 감사원 감사위원
부위원장 송중문	대전중재부	중앙일보 이사
중재위원 이종세	서울제7중재부	(현) 한국체육언론인회 회장
중재부장 권혁중	서울제8중재부	(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중재위원 박재우	광주중재부	(현) 변호사
중재위원 이상식	대구중재부	(현) 계명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중재위원 김영일	충북중재부	충청타임즈 대표이사
중재위원 김재금	전북중재부	전북일보 주필
중재위원 오상훈	제주중재부	(현) 제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올해 6월 춘천 가는 기차 안에서 일어난, 정확히 표현하면 목격한 일이었다. 반쯤 눈이 감긴 상태로 비몽사몽 창밖을 바라보는데 뭔가 번쩍했다. 순간 톰 크루즈가 주연했던 영화 <우주전쟁>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기차 안이었기 때문에 도망갈 생각은 하지 않고 카메라를 꺼내들었다. 또 한 번 번쩍 하여 이 순간을 찍을 수 있었다. 천둥소리를 기다렸지만 기차 소리에 묻혔는지 무소식이었다. 여름이 끝나가지만 아직 더워서 낚랑특집으로 하나 소개했다. 지나치게 무서워할까봐 사실을 밝히면 저 불빛은 이쪽 창밖의 산 위가 아니라 내 등 뒤쪽, 그러니까 반대편 창밖의 빛이 이쪽 유리창에 비친 것이다. 그런데 아직 저게 뭐였는지는 모르고 있다. 더 무서운가?



공모분야

<기획논문> : 주제 - 기술 주도 미디어 시대와 인격권
(제안서 제출 필요)

※ 세부 주제 내용은 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연구논문> : 표현의 자유, 인격권, 언론윤리, 미디어법제 등 <미디어와 인격권> 발행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 전반(언론법제 관련 판례 평석 포함)

응모자격

1. 언론학 및 법학 관련 학회 회원
2. 관련 분야의 전문자격증 소지자 및 종사자로서 해당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등

제출마감

1. 기획논문

: 제안서 제출마감 - 2017년 9월 11일(월) 까지

: 기획논문 제출마감 - 2017년 11월 13일(월)까지

(제안서 채택자에 한함)

2. 연구논문 제출 마감 : 2017년 11월 13일(월)까지

논문접수

이메일 접수(journal@pac.or.kr)

※ <미디어와 인격권>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를 참고하시거나 연구팀(02-397-3042)으로 문의바랍니다.